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

| | |
|----------|---|
| 의안 번호 | 3 |
|----------|---|

제출년월일 : '95. 7.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서 부지사를 2인 이상 두는 경우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별정직으로 임용토록 되어있는 정무부지사의 임용근거가 되는 자격을 충청북도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
 -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

□ 첨 부

1.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 1부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는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4.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